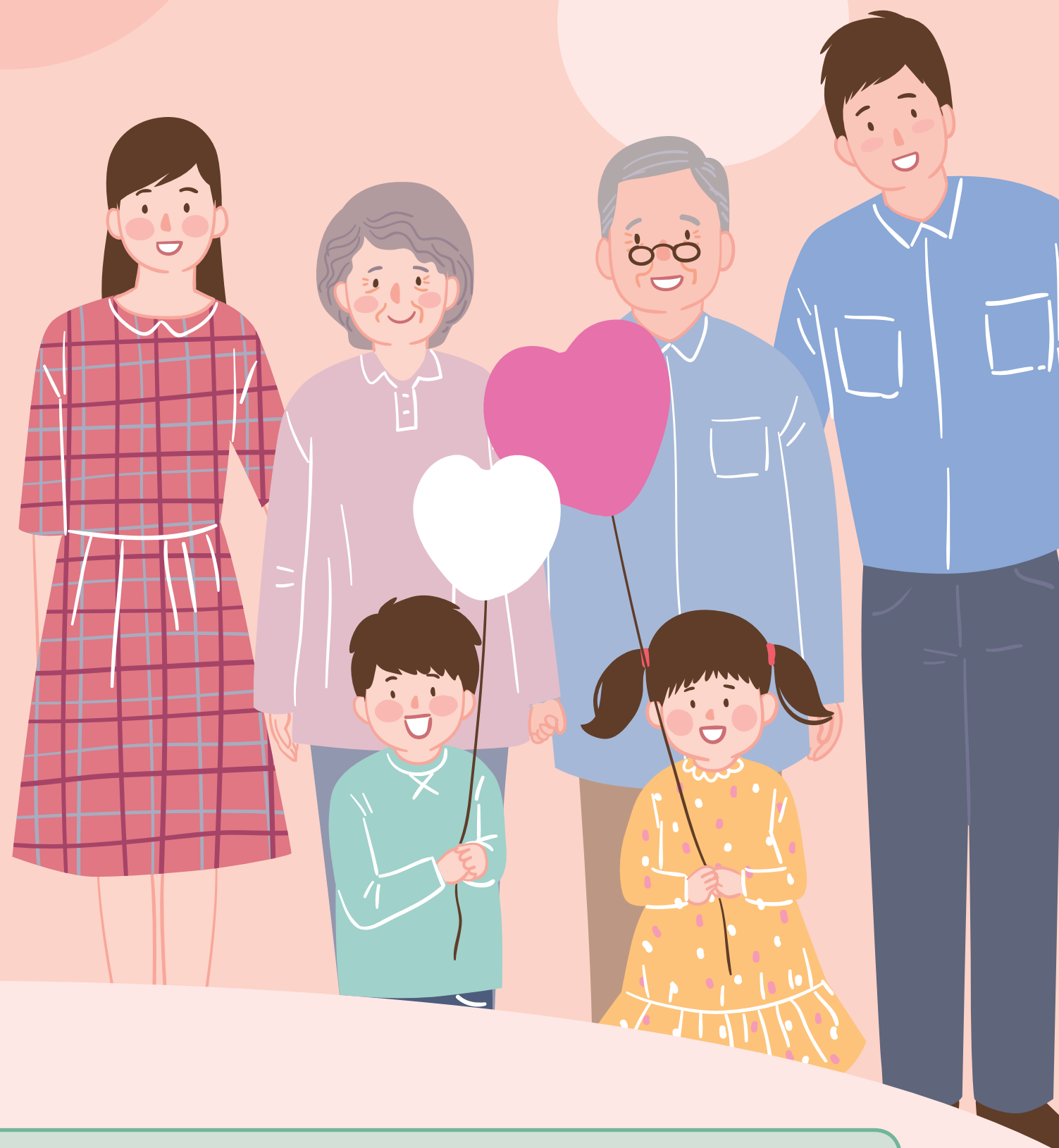


“당신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?”

연명의료 결정제도
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,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

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?

1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

- 누가?**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
- 어디에서?**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
- 무엇을?** 해당 환자가 ‘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,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’ 인지 판단합니다.

2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

- 누가?**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
- 어떻게?**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

3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

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(유보), 중단합니다.

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방법
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-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,
- ①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.
 - ②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,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.

확인되지 않으면 ▼

연명의료계획서

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,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.

확인되지 않으면 ▼

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

환자가 작성한 서식도,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라면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,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.

확인되지 않으면 ▼

환자가족 전원 합의

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.

*환자 가족 범위

- ①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
- ②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(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)
- ③ 형제자매(①+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)